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36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안 제44조의11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0.

다. 회 부 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 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경기·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75조의2).

Ⅲ. 검토의견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경기·시설 등의 입장권·관람권·이용권·할인권·교환권 등이나 철도·선박·항공기 등의 탑승권 등(“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11 신설).
- ‘부정판매’란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함.
- 안 제44조의11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11(입장권등의 부정판매)

현행	개정안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경기·시설 등의 입장권 · 관람권·이용권·할인권·교 환권 등이나 철도·선박·항공 기 등의 탑승권 등(이하 “입장 권등”이라 한다)을 부정판매(입 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 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 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 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② (생략)	제74조(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11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의----- ----- ----- ----- ----- ----- -----.

다. 검토사항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안 제44조의11)

- 최근 온라인에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의 입장권등을 예매하고, 이를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 최근 한 유명 가수의 정가 18만원대 공연 입장권은 온라인상에서 500만원대에 거래되는 등 온라인상 부정판매로 인한 논란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음.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는 정당하게 공연 등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입장권등 시장의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방지의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부정판매 처벌에 대한 일반근거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상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일반근거를 두고 있으나¹⁾, 온라인상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일반근거가 없어 「형법」상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일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건전한 구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공연, 운동경기, 체육시설 입장권등과 철도 승차권 등의 경우 이미 「공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시 해당 입장권등의 경우 규제의 중복 또는 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철도 승차권의 경우 문화·예술·체육 분야 입장권등과 달리

1)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홍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2)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아니한 부정판매도 처벌하고 있고 벌칙 수준도 상이한 등 현재 분야별로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의 일반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개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정판매에 대한 개별법상 처벌규정>

법률	금지 행위	처벌
공연법 ³⁾	- 정보통신망법에 <u>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u> 공연의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⁴⁾	- 정보통신망에 <u>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u>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⁵⁾	- 정보통신망에 <u>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u> 체육시설 이용권·할인권·교환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철도사업법 ⁶⁾	-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할인권·교환권 등)를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온라인상 압포 매매에 대한 처벌의 일반근거를 신설하려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7).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공연법」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소관기관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규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5)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6)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 의안번호 제2204410호(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제2204792호(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제2206356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연, 경기 등의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제 수준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에 따라 규제의 중복 및 불일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몰수·추징(안 제75조의2)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 판매를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음⁸⁾.

8)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따라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몰수·추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일반근거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⁹⁾.

문 의 처
02)6788-5230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9)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벌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